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519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214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5192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고1. 주식회사 B

2. C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수

변론 종결2021. 7. 13.

판결 선고2021. 9. 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3,07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3,076,0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63,07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63,07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D축산물공판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 등을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한우육류 등을 납품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액은 2019. 3. 27. 기준으로 144,859,800원이고, 현재까지 163,076,026원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는 2019. 3. 27.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C 영농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영천시 F 임야 42m², G 공장용지

179m², H 공장용지 24m², I 임야 3,008m², J 임야 583m², K 공장용지 5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27.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영농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C 영농조합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7.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영농조합,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18. 4. 30.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 2018. 8. 20. L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③ 2018. 10. 31. 주식회사 M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④ 주식회사 N가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074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2. 27.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⑤ 0이 청구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25.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 영농조합 등의 변제로 2019. 3. 27. 중소기업은행, L, 주식회사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3) 피고 C 영농조합은 피고 B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가) 피고 C 영농조합은 피고 B의 채권자 L에게 2019. 3. 19. 30,000,000원, 2019. 3. 27. 18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 영농조합은 2019. 3. 27.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 원금 1,620,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 영농조합은 피고 B의 채권자 주식회사 M에게 2019. 3. 27.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 영농조합은 피고 B의 채권자 주식회사 N에게 2019. 3. 27.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 C 영농조합은 피고 B의 채권자에게 2,150,640,000원(= 210,000,000원 +

1,620,640,000원 + 150,000,000원 + 1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11. 피고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4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B는 2019. 4. 11. 피고 C영농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349,36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 B의 대표이사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19,85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S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C 영농조합 명의의 U조합 계좌로 5차례에 걸쳐 32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2,500,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L에 대한 채무 210,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 1,626,938,838원(= 원금 1,620,640,000원 + 이자 등 6,298,838원), ③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④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70,000,000원, ⑤ O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⑥ 원고에 대한 채무 144,859,800원, 합계 2,651,798,638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3,07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영농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피고 C 영농조합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C 영농조합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 영농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C 영농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시세보다 높은 25억 원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 B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고 B가 피고 C 영농조합과 통모하여 원고 등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C 영농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25억 원이 부당한 염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 영농조합이 피고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금 21억 5,064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영농조합은 2019. 4. 11. 매매대금 잔금 349,36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B는 같은 날 위 돈 중 319,850,000원을 S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S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영농조합에게 다시 320,000,000원이 이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C 영농조합과 통모하여 원고 등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C 영농조합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C 영농조합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21억 5,064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영농조합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는 2,500,000,000원으로 추인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1,986,938,838원(=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액 1,626,938,838원 + L의 채권액 210,000,000원 + 주식회사 M의 채권액 150,000,000원)인바, 513,061,162원(= 2,500,000,000원 - 1,986,938,838원)이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한도가 된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원고가 물품대금채권액 163,076,026원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63,076,0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영농조합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63,07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영농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권성우

별지